김영남 디자인보호법 객관식 제1판 정오표

1. 중요문제 148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26번	문제	문제
	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이 선출원이 되었고,	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이 선출원이 되었고,
	움직이는 형태 중 하나의 정지상태의 디자인이	움직이는 형태 중 하나의 정지상태의 디자인이
	후출원이 된 <mark>후 선출원이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</mark>	후출원이 된 <mark>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주의(디자인</mark>
	후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하지	보호법 제46조)에 위반되어 등록이 불가한 경우
	<u>않는다.</u>	<u>가 있다.</u>
	해설	해설
	⑤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, 선출	⑤ 선출원 동적디자인과 후출원 정적디자인이
	원된 디자인 중 "일부"는 선출원 디자인 중 "폐	전체로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(동작
	쇄된 영역"을 말하는 것이다. 따라서 형태가 변	의 내용이 참신하지 아니하고, 정지상태의 디자
	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하나의 정지상태를 "일	인이 유사한 경우)에는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
	부"로 보지 않는다.	<u>있다.</u>
28번	문제	문제
	⑤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표시부	⑤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표시부
	를 바라보는 1개의 도면을 제출 할 수 <mark>있다.</mark>	를 바라보는 1개의 도면을 제출 할 수 <mark>없다.</mark>
32번	해설	해설
	<u>(□):(X)</u>	<u>(□):(0)</u>
	<u>(H):(O)</u>	<u>(ㅂ):(X)</u>
109번	문제	문제
	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금지를 청구	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손해의 배상을
	<u>할 때에는</u> 도면이나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한	청구할 때에는 도면이나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
	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	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
	를 하여야 한다.	고를 하여야 한다.
	해설	해설
	③ 도면 등 디자인의 실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	③ 침해금지를 청구할 경우와 달리 손해의 배상
	있어야 한다(제113조 제2항).	청구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
		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2. 진도별 기출문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46번	해설	해설
	4	④ <u>심사기준(306쪽)은 "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</u>
		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
		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
		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
		를 표현하는 정·배면도, 평·저면도, 좌·우측면도, 사시
		도 등의 필수도면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
		게 표현하는 전개도, 단면도, 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은 후출원된 부분디자인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
		응는 우울편인 수준이시간의 목대한 전울편의 시위을 갖는다."라고 정하고 있다.
		위 내용에 따르면 사용상태도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
		위가 인정되나, 참고도면은 확선의 지위를 가지지 아
		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. 따라서 혹시 출제가
		된다면, ①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② 심사기준을
		절대기준으로 보기보다, 다른 지문과 관계에서 상대적
		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		해당 문제는 3번에서 명확히 틀렸으므로, 4번은 옳은
		지문으로 처리하였다.
90번		문제
	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	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
	자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, 최초에	자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, 최초에
	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	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
	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<mark>아니하였다면</mark> 분할하는	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<u>아니한 경우라도</u>
	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	분할하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
	예외규정의 적용을 <u>받을 수 없다.</u>	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<mark>받을 수 있다.</mark>
	해설	해설
	② 분할출원의 종속성 상, 원출원에서 신규성상	② 원출원에서 신규성상실예외를 주장하지 아니
	실예외주장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절차에서	한 경우, 분할출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
	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할 수 없다.	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바, 원출원에서 신규
		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, 분
		할출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.
91번	해설	해설
	④ 특허법(제30조 공지예외주장)과 달리 디자인	④ <u>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</u>
	보호법 상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은 보완수수료	
	납부하여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할 수 없다.	
103번	문제	문제
	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	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
	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	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
	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	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
	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	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
	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	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 <mark>를 다시 제출하거나</mark>
	우선권증명서류 <u>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</u>	이미 제출된 증명서류를 원용하여야 한다.
	것으로 본다.	

	해설	해설
	"- ③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	"
	분할출원에도 우선권주장의 효과를 받기	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
	위해서는 우선권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	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
	한다. 다만 증명서류의 원용이 가능하다.	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
		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할의
		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
		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
		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
		제출된 것으로 본다(제50조 제4항).
128번	정답	정답
	<u>3</u>	<u>②</u>
133번	문제	문제
	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	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
	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	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
	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	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
	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	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
	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	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
	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	(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
	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	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
	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	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)
	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.	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
		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
		금액을 <mark>포함하여</mark>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
		할 수 있다.